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료징수조례증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한 규제를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상위법인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현행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

- 본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3.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한 규제를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상위법인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현행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조례 폐지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첫째, 호적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 징수함에 있어 구조례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호적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동법 제130조와 제131조에서 과태료 부과요건과 그 상한액을 정하고, 동법 제1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서는 구청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적사무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대법원 판례 94다45654 판결)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호적법과 호적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나 징수절차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상위법인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호적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과태료 부과요건과 그 상한액,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과태료부과액)인가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징수권자인 구청장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상위법인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오히려 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도 제정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폐지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규칙 등의 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